

# 장애인의 폭력·차별실태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애인은 여러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상황에 있으며, 폭력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발생시 피해 장애인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이 필요시되고, 장애차별의 문제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주권원칙에 의해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무시·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7%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성차별·폭력의 경우는 1.0%의 장애인이 경험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0.7%에 비해 0.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았던 영역은 보험제도 계약시(55.6%)였고, 정보통신이용시 차별경험(0.4%)은 가장 적었다.

장애인의 폭력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대상의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관련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의 의식과 역량강화 또한 중요하다

## 1. 들어가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상황에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여성이라는 성차별을 부가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 대상 폭력의 경우도 가정폭력이건, 성폭력이건 여성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폭력 발생시 피해 장애인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이 필요시 되며, 장애차별의 문제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주권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더 이상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인 장애인의 사회통합(integration)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 실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애인의 폭력실태

### 1)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족내 차별·폭력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끔 있다'(7.4%), '자주 있다'(2.3%)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내 차별·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7%로 2005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와 간질장애의 가족내 차별·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내부 장애유형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들이 받은 가족 내 차별·폭력유형은 '언어폭력(45.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폭력(30.5%)', '방음·유기(15.3%)', '신체적 폭력(9.0%)'의 순이었다.

### 2) 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9.0%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성관련 차별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0%의 장애인은 성차별·폭력 등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0.7%에 비해 0.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유형 장애인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정신장애(7.3%), 간질장애(3.6%), 지적장애(2.8%), 자폐성장애(1.7%)의 순이었다.

### 3) 가정폭력·성폭력의 가해자 및 대처방법

가족내 차별·폭력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주가해자는 '배우자'가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25.8%)', '형제·자매(21.7%)'의 순이었다. 그 외 '자녀'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9.4%나 되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 가해자는 40.8%가 '모르

표 1.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구분	(단위: %, 명)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주 있다	1.1	3.1	2.0	2.7	4.0	5.3	2.7	9.8	4.5	1.6	1.8	1.2	1.9	0.8	7.4	2.3
가끔 있다	4.4	11.2	4.6	7.7	6.6	17.3	15.6	28.1	5.9	5.8	4.3	5.2	7.3	4.0	21.9	7.4
없다	94.5	85.6	93.4	89.6	89.4	77.4	81.6	62.1	89.6	92.6	93.9	93.5	90.8	95.2	70.7	9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는 사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28.7%, '이웃' 18.4%의 순이었다.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는다'가 6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2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9.0%), '무시한다'(3.1%)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참거나 무시하는 소극적 대응이 68.6%였다.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52.3%가 '못했음'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가족'(41.2%), '친척·친구·이웃'(2.5%) 순이었다. 그 외 '사회복지 관련기관 직원'(0.8%)이나 '행정공무원'(1.2%)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3. 장애인 차별실태

#### 1)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의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

표 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다	99.3	98.9	99.8	99.6	99.2	97.2	98.3	92.7	100.0	99.4	100.0	100.0	98.3	100.0	96.4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가족내 차별·폭력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가정폭력		전체	구분	성희롱·폭력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배우자	41.4	36.4	39.0	근친(가족)	0.0	3.0	2.5
부모	26.1	25.6	25.8	이웃	11.8	19.8	18.4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6.4	12.7	9.4	먼친척	0.0	10.7	8.8
형제·자매	25.1	18.1	21.7	모르는 사람	61.4	36.3	40.8
조부모	0.5	1.4	0.9	학교관계자	1.7	0.6	0.8
손자녀	0.0	1.2	0.6	기타	25.0	29.5	28.7
기타	0.5	4.6	2.5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표 4.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시한다	1.6	3.4	3.1
참는다	87.4	60.7	65.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7	25.6	22.4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10.2	9.0
계	100.0	100.0	100.0

고 있는데, 먼저 입학·전학시 장애인의 차별경험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구분하여 본 결과, 유치원(26.9%), 초등학교(26.1%), 중학교(19.3%), 고등학교(16.8%), 대학교(6.9%)의 순으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교육단계로 갈수록 차별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장애인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학교생활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교사, 또래학생, 학부모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학교생활시 또래 학생으로 차별을 받은 경험(48.9%)이 매우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 학부모의 순이었다.

장애인들은 결혼시 16.1%가 차별받은 경험

이 있었고, 취업시에는 35.0%가 장애인이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은 소득(임금), 동료와의 관계, 승진시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는데, 소득(임금)에서의 차별경험이 2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료와의 관계, 승진시의 순이었다. 그 외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11.8%, 보험제도 계약시에는 55.6%, 의료기관 이용시는 3.3%, 정보통신 이용시에는 0.4%, 그리고 지역사회생활시에는 20.6%의 장애인이 차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여러 차별경험들을 볼 때, 사회적 차별 경험의 가장 많았던 것은 보험제도 계약시(55.6%)였고, 정보통신이용시 차별경험(0.4%)은 가장 적었다.

표 5. 사회적 차별 경험(입학·전학시, 학교생활시)

(단위: %, 명)

구분	입학·전학시					학교생활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로부터	또래 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았다	26.9	26.1	19.3	16.8	6.9	18.9	48.9	8.4
안받았다	73.1	73.9	80.7	83.2	93.1	81.1	51.1	9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사회적 차별 경험(결혼·취업·직장생활시·운전면허 취득시·보험제도 계약시·기타)

(단위: %, 명)

구분	결혼시	취업시	직장생활시			운전면허 취득시	보험제도 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	지역사회 생활시
			소득 (임금)	동료와의 관계	승진시					
받았다	16.1	35.0	20.8	13.1	9.1	11.8	55.6	3.3	0.4	20.6
안받았다	83.9	65.0	79.2	86.9	90.9	88.2	44.4	96.7	99.6	7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차별발생시 대처방식으로는 전반적으로 ‘무시 또는 참기’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취업이나 직장생활시, 지역사회생활이 95%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경우는 ‘무시 또는 참기’ 다음으로 많았는데, 특히 입학·전학시 차별받은 경우에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생활에서는 2.4%로 가장 적었다. ‘진정·고발 등의 조치’ 즉,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입학·전학시나 학교생활시 차별 받은 경우에 가장 많았는데, 특히 유치원 입

학·전학시(1.7%)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 발생시 ‘무시 또는 참기’의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의 장애차별 인지 및 인식정도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35.0%가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53.3%의 장애인은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통’은 11.6%로 응답하여, 전체

표 7.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입학·전학시·학교생활시)

(단위: %, 명)

구분	입학·전학시					학교생활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로부터	또래 학생 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무시 또는 참기	86.0	79.5	68.0	62.0	57.9	83.9	81.5	90.8	
그 자리에서 항의	9.3	18.7	30.1	37.6	40.6	13.5	17.0	7.6	
진정·고발 조치	2.9	1.5	0.6	0.2	-	1.8	1.2	1.3	
기타	1.7	0.3	1.3	0.2	1.5	0.7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결혼·취업·직장생활시·운전면허 취득시·보험제도 계약시·기타)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 취득시	보험제도 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	지역사회 생활
			소득 (임금)	동료와의 관계	승진					
무시 또는 참기	86.3	96.1	96.7	92.7	96.7	90.9	94.9	91.8	87.2	96.9
그 자리에서 항의	11.5	3.8	3.2	7.2	3.2	9.1	4.3	8.1	12.8	2.4
진정·고발 조치	0.6	0.1	0.0	0.1	0.1	-	0.8	0.1	-	0.6
기타	1.6	0.0	-	-	0.0	-	0.1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적으로 본인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없다’는 경우가 5.4%, ‘보통이다’ (14.8%), ‘많다’ (79.7%)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더 많았다.

4. 정책적 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상황에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폭력발생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폭력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시 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 대상 폭력예방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 국

표 9. 장애인 본인의 차별인지정도 및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정도

(단위: %, 명)

구분	장애란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전체	구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항상 느낀다	8.3			6.9	7.7	
가끔 느낀다	27.3	27.3	27.3	별로 없다	4.5	6.4	5.3
보통	11.2	12.2	11.6	보통이다	15.3	14.1	14.8
별로 느끼지 않음	32.0	31.3	31.7	약간 많다	37.9	39.7	38.6
전혀 느끼지 않음	21.1	22.3	21.6	매우 많다	42.2	39.6	41.1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민들 대상의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각 영역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국민, 특히 학교 및 직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가정폭력·성폭력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발생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인면서 여성으로서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또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홍보효과가 큰 언론매체를 통한 전 국민 대상의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은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장애유형은 각각 고유의 장애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설계 및 정책 마련시 반드시 각 장애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유형일수록, 장애정도는 중도장애인일수록, 성별로는 여성일수록 차별이

나 폭력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각 장애특성에 따라 다른 실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각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접근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는 그 동안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 스스로의 의식과 역량강화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역량강화와 자립생활은 활동보조, 교통편의 등을 통한 이동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것으로 차별해소와 인권의식 신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문경복**